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호 155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회 운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u>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u>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생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 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삭제>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 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 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u>시장</u>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별도의 자문을 받을 때에는 자문료를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 령

【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7386호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개정법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u> 으로 한다.

제1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기반시설 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 이라 한다)이 된다
 -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심 의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u>으로 구성·운영할수 있다.
 - ⑤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등)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 ⑤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 회의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 <u>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 심의위원</u>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⑨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 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